※ 번역문은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기존의 한글 서식에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양식 제11호]

[様式第11号]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離婚（親権者指定）届

(　　년　　월　　일)
(　　年　　月　　日)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 届出書は、裏面の作成方法を参考に記入し、選択項目には「○」をつけてください。

구 분 区分			남편(부) 夫になる人（夫）		아내(처) 妻になる人（妻）	
① 이혼 당사자 (신고인) ① 離婚 当事者 (届出人)	성명 氏名	한글 ハングル	*(성) /(명) *(氏) /(名)	(서명 또는 날인) (署名又は捺印)	*(성) /(명) *(氏) /(名)	(서명 또는 날인) (署名又は捺印)
		한자 漢字	(성) /(명) (氏) /(名)		(성) /(명) (氏) /(名)	
	본(한자) 本貫（漢字）		전화 電話 番号		본(한자) 本貫（漢字）	전화 電話 番号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	
	출생연월일 生年月日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주소 *住所					
② 부모 (양부모) ② 父母 (養父母)	부(양부)성명 父（養父）の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	
	모(양모)성명 母（養母）の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	
③기타 사항 ③その他の事項						
④재판확정일자 (　　) ④裁判確定日 (　　)		년 월 일 年 月 日		법원명 裁判所の名称	법원 裁判所	
아래 친권자란은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후에 기재합니다. **下記の親権者欄は協議離婚の場合は裁判所による協議離婚意思の確認の上で記入してください。**						
⑤ 친권자 지정 ⑤ 親権者 指定	미성년인 자의 성명 未成年者である者の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	

	친권자 親権者	(1)부 (1)父 (2)모 (2)母 (3)부모 (3)父母	효력발생일 効力発生日	년 월 일 年 月 日	(1)부 (1)父 (2)모 (2)母 (3)부모 (3)父母	효력발생일 効力発生日	년 월 일 年 月 日
			원인 原因	(1) 협의 (2) 재판 (1) 協議 (2) 裁判		원인 原因	(1) 협의 (2) 재판 (1) 協議 (2) 裁判
	미성년인 자의 성명 未成年者である者の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	
	친권자 親権者	(1)부 (1)父 (2)모 (2)母 (3)부모 (3)父母	효력발생일 効力発生日	년 월 일 年 月 日	(1)부 (1)父 (2)모 (2)母 (3)부모 (3)父母	효력발생일 効力発生日	년 월 일 年 月 日
			원인 原因	(1) 협의 (2) 재판 (1) 協議 (2) 裁判		원인 原因	(1) 협의 (2) 재판 (1) 協議 (2) 裁判
⑥신고인 출석 여부 ⑥届出人の出席有無		(1) 남편(부) (1) 夫になる人（夫）			(2) 아내(처) (2) 妻になる人（妻）		
⑦제출인 ⑦提出者	성명 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他人の署名又は印章を盗用して虚偽の届出書を提出したり、虚偽の届出を行い、家族関係登録簿に事実と異なる内容を記載させた場合は、**刑法に基づき処罰**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米印（*）の資料**は国の統計作成のために統計庁でも収集している資料です。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下記の事項は**「統計法」第24条の2**に基づき**統計庁で実施する人口動向調査**です。「統計法」第32条及び第33条に基づき誠実に回答する義務があり、個人の秘密事項は厳重に保護されますので事実を正確に記入してください。

※ 첨부서류 및 이혼당사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添付書類及び離婚当事者の国籍は国の統計作成のために統計庁でも収集している資料です。

인구동향조사
人口動向調査

㉮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イ. 結婚して実際に同居を始めた日	년 월 일부터 年 月 日から		㉰ 19세 미만 자녀 수 ハ. 19歳未満の子の数	명 名	
㉯ 실제 이혼 연월일 ロ. 実質的に離婚した日	년 월 일부터 年 月 日から				
㉱ 최종 졸업학교 ニ. 最終学歴	남편(부) 夫	(1) 학력 없음 (2) 초등학교 (3) 중학교 (1) 学歴なし (2) 小学校 (3) 中学校 (4) 고등학교 (5) 대학(교) (6) 대학원 이상 (4) 高校 (5) 大学 (6) 大学院以上	아내(처) 妻	(1) 학력 없음 (2) 초등학교 (3) 중학교 (1) 学歴なし (2) 小学校 (3) 中学校 (4) 고등학교 (5) 대학(교) (6) 대학원 이상 (4) 高校 (5) 大学 (6) 大学院以上	
㉲ 직업 ホ. 職業	남편(부) 夫	(1) 관리직 (2) 전문직 (1) 管理職 (2) 専門職 (3) 사무직 (4) 서비스직 (3) 事務職 (4) サービス業 (5) 판매직 (6) 농림어업 (5) 販売職 (6) 農林漁業 (7) 기능직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7) 技能職 (8) 装置・機械操作及び組立関連	아내(처) 妻	(1) 관리직 (2) 전문직 (1) 管理職 (2) 専門職 (3) 사무직 (4) 서비스직 (3) 事務職 (4) サービス業 (5) 판매직 (6) 농림어업 (5) 販売職 (6) 農林漁業 (7) 기능직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7) 技能職 (8) 装置・機械操作及び組立関連	

		(9) 단순노무직 (10) 군인 (9) 単純労務職 (10) 軍人 (11) 학생·가사·무직 (11) 学生・家事・無職			(9) 단순노무직 (10) 군인 (9) 単純労務職 (10) 軍人 (11) 학생·가사·무직 (11) 学生・家事・無職

작성방법
作成方法

※ 등록기준지: 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登録基準地：各欄の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はその国籍を記入してください。

※ 주민등록번호: 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住民登録番号：各欄の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は外国人登録番号（国内居所申告番号又は生年月日）を記入してください。

①란: 협의이혼신고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또는 날인) 하여야 하나,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일방이 서명(또는 날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欄①：協議離婚届の場合は必ず当事者双方が署名（又は捺印）する必要があるが、裁判上の離婚の場合はその一方が署名（又は捺印）して届け出ることができます。

②란: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합니다.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또는 출생연월일) 및 국적을 기재합니다.

欄②：離婚当事者の父母が住民登録番号がない場合は登録基準地（本籍）を記入してください。離婚当事者が養子の場合、養父母の基本事項を記入し、離婚当事者の父母が外国人の場合は住民登録番号欄に外国人登録番号（又は生年月日）及び国籍を記入してください。

③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欄③：下記の事項及び家族関係登録簿へ明確に記録するために、特に必要な事項を記入してください。

-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 届出事件によって身分が変更される者の場合、当該人の氏名、生年月日、登録基準地及び身分変更の理由
- 피성년후견인(2018.6.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또는 날인) 및 출생연월일
- 成年被後見人（2018年6月30日までは禁治産者を含む）が協議離婚をする場合は、同意者の氏名、署名（又は捺印）及び生年月日

④란: 이혼판결(화해, 조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欄④：離婚判決（和解、調停）の場合のみ記入し、協議離婚の場合は記入しないでください。

: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재판확정일자”아래의 (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 “화해권고결정”이라고 기재하고, “연월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 調停成立、調停に代わる決定、和解成立若しくは和解勧告決定による離婚届の場合は「裁判確定日」の下の( )の中に「調停成立」、「調停に代わる決定確定」又は「和解成立」、「和解勧告決定」と記入し、「年月日」欄にその成立（確定）日を記入してください。

⑤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시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후에 정하여진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欄⑤：協議離婚の意思確認を申請する場合は記入せず、裁判所による離婚の意思確認後に決められた親権者を記入してください。

지정효력발생일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을 기재합니다.

指定効力の発生日については協議離婚の場合は離婚届出日を、裁判上の離婚の場合は裁判確定日を記入してください。

원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지정한 경우에는 “①협의”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경우에는 “②재판”에 ‘영표(○)’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原因については当事者の協議によって指定された場合は「①協議」に、職権又は届出によって裁判所が決定を下した場合は、「②裁判」に「○」をつけ、その内容を証明する書面を添付する必要があります。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별지 기재 후 간인하여 첨부합니다. 임신 중인 자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합니다.

子が5人以上の場合は別紙に記載の上、割印して添付してください。妊娠している者の場合は出生届を提出する時に、親権者指定届を提出してください。

⑥란: 출석한 신고인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欄⑥：出席した届出人の当該番号に「○」をつけます。

⑦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欄⑦：提出者（届出人が記入した届出書を届出人でない者が提出する場合のみ記載）の氏名及び住民登録番号を記入してください［受付担当公務員は身分証明書との照合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 下記の事項は「統計法」第24条の2に基づき**統計庁で実施する人口動向調査**です。

㉮란, ㉯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일이나 재판확정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과 사실상 이혼(별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재합니다.

欄イ、欄ロ：家族関係登録簿上の届出日若しくは裁判確定日とは関係なく、結婚して実際に同居を始めた日と事実上離婚（別居）を始めた日を記入してください。

㉱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4)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欄二：教育部長官が認める全ての正規教育機関を基準にして記入し、各学校における在学又は中退者は 最終的に卒業した学校の当該番号に「○」をつけてください。〈例〉大学3年在学中（中退）(4) 高校に「○」をつける

㉰란: 이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欄ホ：離婚する当時の主たる職業を基準に記入してください。

(1) 관리자: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
(1) 管理者：政府、企業、団体又はその内部の部署の政策と活動を企画、指揮及び調整（公共及び企業の役員等）
(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과학, 의료, 복지, 교육, 종교, 법률, 금융, 예술, 스포츠 등)
(2)専門家及び関連の従事者：専門知識を活かした技術的業務（科学、医療、福祉、教育、宗教、法律、金融、芸術、スポーツ等）
(3) 사무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 추진(행정, 경영, 보험, 감사, 상담·안내·통계 등)
(3) 事務従事者：管理者、専門家及び関連従事者を補助して業務を推進（行政、経営、保険、監査、相談、案内、統計等）
(4) 서비스종사자: 공공안전, 신변보호, 돌봄, 의료보조, 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업무
(4) サービス業従事者：公共安全、身辺警護、介護、医療補助、美容、婚礼及び葬礼、運送、レジャー、調理に関連する業務
(5) 판매종사자: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인터넷, 상점, 공공장소 등), 상품의 광고·홍보, 계산·정산 등
(5) 販売従事者：営業活動を通じて商品若しくはサービスの販売（インターネット、商店、公共場所等）、商品の広告、広報、計算、精算等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작물의 재배·수확, 동물의 번식·사육, 산림의 경작·개발, 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
(6) 農林・漁業の熟練従事者：作物の栽培、収穫、動物の繁殖、飼育、山林の耕作・開発、水生動植物の繁殖及び養殖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 제품 가공
(7) 技能員及び関連の技能従事者：鉱業、製造業、建設業において手と手工具を使用して機械設置及び整備、製品加工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 생산·조립, 산업용 기계·장비조작, 운송장비의 운전 등
(8) 装置・機械操作及び組立関連の従事者：機械を操作し製品の生産組立、産業用機械装置の操作、運送装置の運転等
(9) 단순노무 종사자: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
(9) 単純労務の従事者：簡単な手工をの使用し、単純かつ日常的で肉体的労力が求められる業務
(10) 군인: 의무복무를 포함하여, 현재 군인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국방 분야에 고용된 민간인과 예비군은 제외)
(10) 軍人：義務的兵役を含み、現在軍人の身分を維持している場合（国防分野に雇用されている民間人と予備軍は除く）
(11) 학생·가사·무직: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학습에만 전념하거나, 전업주부이거나,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11) 学生・家事・無職：教育機関に在学して学業に専念しているか、専業主婦若しくは決まった職業がない場合

첨부서류
添付書類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1. 協議離婚：協議離婚意思の確認書謄本1部
2. 재판이혼: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2. 裁判離婚：判決謄本及び確定証明書各1部（調停・和解成立の場合調書謄本及び送達証明書）
3.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3. 外国裁判所の離婚判決による裁判上の離婚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 離婚判決の正本又は謄本と判決確定証明書各1部
   -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 敗訴した被告が韓国国民の場合、当該被告が公示送達によらず訴訟の開始に必要な召喚又は命令の送達を受けているか、又はその送達を受けていなくても訴訟に応じている事実を証明する書面1部（判決によってこの点が不明の場合に限る）。
   - 위 각 서류의 번역문 1부.
   - 上記の各書類の翻訳文 1部

※ 아래 4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以下の第4項は、家族関係登録官署にて情報システムでその内容が確認できる場合は添付を省略してください。

4.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各離婚当事者の家族関係登録簿の家族関係証明書、婚姻関係証明書各1通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5. 事件本人が外国人の場合

- 한국 방식에 의한 이혼: 사건본인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첨부

韓国の方式による離婚の場合：事件本人双方が外国人の場合は国籍を証明する書面（旅券又は外国人登録証）の写しを添付

- 외국 방식에 의한 이혼: 이혼증서 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 外国の方式による離婚の場合：離婚証書謄本及び国籍を証明する書面（旅券又は外国人登録証）の写し1部

6.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

6. 親権者指定に関する証明資料

-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1부.

- 協議による場合、親権者指定協議書謄本1部

-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 증명서 1부.

- 裁判所が決定を下した場合、審判書の正本及び確定証明書1部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7. 身分を確認できるもの［家族関係登録例規第600号に基づく］

① 재판상 이혼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이혼신고 포함)

① 裁判上の離婚届（証書謄本による離婚届を含む）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届出人が出席した場合：身分証明書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提出者が出席した場合：提出者の身分証明書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郵送で提出する場合：届出人の身分証明書の写し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届出人が成年後見人の場合は、第7項の①書類の他に成年後見人の資格を証明する書面も添付してください。

② 협의이혼신고

② 協議離婚届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届出人が出席した場合：届出人の一方の身分証明書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 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届出人が欠席し、提出者が出席した場合：提出者の身分証明書及び届出人の一方の身分証明書又は署名公証又は印鑑証明書（届出人が本人の身分証明書なしに届出書に署名した場合は署名公証、届出書に印鑑を捺印した場合は印鑑証明書）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郵送で提出する場合：届出人の一方の署名公証又は印鑑証明書（届出書に署名した場合は署名公証、印鑑を捺印した場合は印鑑証明書）